

의안번호	2219031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6.07.23.
추계번호	26E267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증권거래세수는 2027년 1,499억원 등 2027~2029년 3년간 총 4,497억원(연평균 1,49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증권거래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17조제1항제5호, 제16호, 제23호, 제24호 및 제2항제2호)	-1,499	-1,499	-1,499	-4,497	-1,49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7조(증권거래세의 면제) 제1항제5호, 제16호, 제23호, 제24호 및 제2항제2호	○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면제 대상(제117조제1항): (제5호)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 양도 (제16호)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 (제23호)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채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투자·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(제24호)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교환 - 적용기한 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7조(증권거래세의 면제) 제1항제5호, 제16호, 제23호, 제24호 및 제2항제2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최근 전체 증권거래세수 대비 증권거래세 면제액의 비율이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증권거래세수는 가장 최근의 2026년도 세수에 대한 전망(2026.4.)¹⁾이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증권거래세수는 세율,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, 세수 진도율 등을 반영해 전망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의 대상인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2024년 672억원 수준

[표 2] 개정안 대상인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의 조세지출 실적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7조제1항)
(단위: 억원)

항 목	2022	2023	2024
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 양도(제5호)	1,310	793	654
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(제16호)	1	20	2
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·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(제23호)	12	13	10
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교환(제24호)	18	23	6
합계	1,341	849	672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」, 2026.4.1.

- 최근 3년간 전체 증권거래세수 대비 개정안의 대상인 증권거래세 면제액의 비율은 연평균 1.6% 수준

[표 3] 전체 증권거래세수 대비 개정안 대상인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의 조세지출액 비율
(단위: 억원, %)

	2022	2023	2024	연평균
증권거래세 면제액(a)	1,341	849	672	954
전체 증권거래세수(b)	63,029	60,803	47,602	57,145
비율(a/b)	2.1	1.4	1.4	1.6

-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증권거래세수는 2027년 1,499억원 등 2027~2029년 3년간 총 4,497억원(연평균 1,49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세수효과는 ‘전체 증권거래세수 전망액×전체 증권거래세수 대비 개정안의 증권거래세 면제액의 비율’로 추계
 - 추계기간 전체 증권거래세수는 2026년도 세수에 대한 최근 전망(2026.4., 9조 1,104억원)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추계기간 전체 증권거래세수 대비 증권거래세 면제액의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(1.6%)이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
[표 4]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3년 연장 시 세수효과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17조제1항제5호, 제16호, 제23호, 제24호 및 제2항제2호)	-1,499	-1,499	-1,499	-4,497	-1,499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